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보고

가. 제안일자 : 2001. 12. 6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12. 6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92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(2001. 12. 1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훈)

□ 제안이유

○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추진팀의 한시정원 증원 및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함에 따라 복식부기 추진팀 정원 및 존속기한을 변경하고,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의 분배소 폐쇄에 따른 운영 관리요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○ 총 정원 : 1,906명

• 집행기관 : 1,880명

• 의회사무기관 : 26명

○ 정원 증감내역

• 증 원 : 3명(복식부기추진팀 : 3)

• 감 축 : 3명(민방위경보요원 : 3)

○ 집행기관 정원 조정내역

<증원인원 : 3명>

• 일반직 : 3명(행정7급 : 2, 전산7급 : 1)

<감축인원 : 3명>

• 일반직 : 1명(통신7급 : 1)

• 기능직 : 2명(통신9급 : 1, 전산9급 : 1)

○ 복식부기추진팀 존속기한 변경

• 당 초 : 2001. 12. 31

• 변 경 : 2003. 12. 31

○ 감축인원 조정내역

• 일반직 : 제2청사 통제소 관리인력으로 조정

• 기능직 : 시흥시(전산9급), 고양시(통신9급)로 재배치 조정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47호
의결년월일	2001. 12. 24 (제92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12. 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추진팀의 한시정원 증원 및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함에 따라 복식부기추진 팀 정원 및 존속기한을 변경하고,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의 분배소 폐쇄에 따른 운영관리요 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총 정원 : 1,906명
 - 집행기관 : 1,880명
 - 의회사무기관 : 26명
- 정원 증감내역
 - 증 원 : 3명(복식부기추진팀 : 3)
 - 감 축 : 3명(민방위경보요원 : 3)
- 집행기관 정원 조정내역
 - <증원인원 : 3명>
 - 일반직 : 3명(행정7급 : 2, 전산7급 : 1)
 - <감축인원 : 3명>
 - 일반직 : 1명(통신7급 : 1)
 - 기능직 : 2명(통신9급 : 1, 전산9급 : 1)

- 복식부기추진팀 존속기한 변경
 - 당 초 : 2001. 12. 31
 - 변 경 : 2003. 12. 31
- 감축인원 조정내역
 - 일반직 : 제2청사 통제소 관리인력으로 조정
 - 기능직 : 시흥시(전산9급), 고양시(봉신9급)로 재배치 조정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773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의 제3조 중 “7명”을 “10명”으로 “2001년 12월 31일”을 “200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 칙(2000. 9. 25 조례 제1773호)	부 칙(현행과 같음)
제3조(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복식부기 7 명은 한시정원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둔다.	제3조(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10 명.....2003년 12월 31일.....